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6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이재관 · 윤준병 · 주철현
권향엽 · 송옥주 · 김승원
이수진 · 강준현 · 문진석
이정문 · 장종태 · 김원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

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② ----- ----- ----- ----- ----- ----- ----- <u>--2030년 12월 31일</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④ ----- ----- ----- ----- ----- ----- ----- ----- ----- -----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100

분의 50(인구감소지역에서 취
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6년</u>	----- <u>2030년</u>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12월 31일</u>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	② -----
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u>2026</u>	----- <u>2030</u>
<u>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년 12월 31일</u> -----.